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44

2025. 11. 26.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6.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4조~제6조)

○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안 제7조, 제8조)

○ 통합지원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안 제9조, 제10조)

○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개인정보 등의 보호(안 제11조~제1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반영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5. 10. 2. ~ 10.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개요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6. 제정, 2026. 3. 27.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3개 조문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돌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개별 제도나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게 되었음.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고자 지난 2024년 3월 26일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에 각 지자체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바, 본 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Ⅱ. 주요 사항 검토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은 법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한 위임조례의 성격과 그 밖의 강남구 통합지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치조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본 제정안에는 “통합지원” 등 조례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의 정의가 조례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정안에서는 입법 기준에 따라 법률에서 용어 정의를 한 사항을 조례에 별도 용어 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고,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법 제2조제2호) 및 통합지원 신청 절차(법 제10조) 등 세부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법령에 따르면 될 것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

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제1항에서는「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적절한 평가 및 환류 과정을 통해 지역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합지원 사업 등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안 제4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통합지원 사업 추진)는 통합지원 제도 하에서 지원하게 될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것임. 주요 사업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등이며, 제정안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제1항제5호)도 통합지원 사업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통합지원이 거주지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적절한 사업 발굴과 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 통합지원은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되어있는 복지서비스를 거주지·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데 그 제도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안 제4조에 열거된 사업은 신규 사업의 창설이라기보다는 통합지원 체계하에서 이용자에게 통합·연계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므로 통합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복지서비스 현황 파악 및 각 부서의 역할 정립, 연계협력 강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각기 분산 되어있는 서비스의 통합·연계 방안 등에 대한 부서 설명이 요구됨.

[강남구 통합돌봄 추진 개요]

□ **대 상 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내용**: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구분	F4 보건의료	F5 건 강	F6 요 양	F7 일상생활	F8 주 거
서비스 내용	**① 방문진료** › 의료돌봄 방문진료지원팀 › 민관협력 방문진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②퇴원환자지원** › 퇴원환자 연계 지원	**① 신체돌봄** › 방문건강관리 › 어르신 노쇠예방관리 **② 마음돌봄** ›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상담소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① 장기요양보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②기타시범사업** › 이동지원서비스 등	**① 긴급돌봄** ›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② 일상돌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① 환경개선** › 스마트 시니어하우스설치 › 홈케어, 세탁짐보관서비스 **② 주택지원** › 기존주택, 전세주택
관련부서 (기관)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웰에이징센터 **복지정책과** 강남, 수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제공기관	**복지정책과** 돌봄SOS제공기관 **어르신복지과** 노인통합지원센터 장기요양제공기관 **장애인복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활동제공기관	**복지정책과**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과** LH,SH **장애인복지과**

(자료: 복지정책과)

○ 안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에서는 구청장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통한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실효성 있는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안 제7조), 통합지원회의(안 제8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안 제10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각각의 역할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안 제7조(통합지원협의체)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가능함.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 제8조(통합지원회의)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 근거를 둠. 분산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의 필요에 맞춰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욕구사정 및 이를 통한 서비스 결정 등을 논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런 점에서 볼 때 통합지원회의는 통합지원 사례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합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 사료되는바 통합지원회의의 구체적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서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통합지원 업무는 의료, 요양, 돌봄 영역 등 기존의 보건복지 관련 사무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무의 안정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 조직 설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인력 운영 방안, 구체적 역할, 기존 보건복지 담당 부서와의 관계 등 전담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에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통합지원 창구는 현장에서 통합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 접수 등 서비스 연계의 기초적 역할 수행하게 될 것

으로 보임.

□ 그 밖의 사항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6년 3월 27일부터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한편, 부칙 제2조(준비행위)에서는 조례 공포일부터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조례 시행 전에 필요한 준비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강남구에서는 통합지원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강남구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4.3.26. 제정, '26.3.27.시행)

○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 시범사업」 선정('25.9.2.)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개요

☞ **통합돌봄**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서비스를 통합지원 하는 것

○ 사업대상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가구

※ 우선관리 대상자 : 요양병원 · 시설 입원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차이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사업 명칭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대상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 **65세 미만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행복e음**

□ 사업목표

○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본사업 시행 시 보완·확대 추진

□ 추진절차

초기상담	▶	신청접수	▶	사전조사	▶	통합지원계획 초안 작성	▶	통합지원회의 참여	▶	모니터링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 구		동주민센터

(자료: 복지정책과)

Ⅲ.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제정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 제정안과 2026년 예산안이 금번 회기에 함께 제출되었는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통합지원 관련 예산(복지정책과, 강남형 통합돌봄 지원 운영, 사업비 121,814천원)이 신규 편성 제출되었음. 비록,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일이 내년 3월 27일이긴 하지만, 법 제정일(‘24. 3. 26.)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전에 충분히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법 위임 사항 반영 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이 같은 시기에 제출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종합하자면, 통합지원은 거주지・이용자 중심으로 보건의료, 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일정 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예: 통합사례관리), 통합지원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돌봄 요구 증가 대응 필요성, 돌봄대상자의 삶의 질과 탈시설화 지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의 복지서비스는 거주자・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행부 전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와의 관계, 각 부서별 역할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44

제출연월일 : 2025. 11. 6.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복지정책과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나.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다.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안 제4조~제6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안 제7조, 제8조)

마. 통합지원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안 제9조, 제10조)

바.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개인정보 등의 보호(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10. 2. ~ 10.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가(在家)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생활편의 지원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판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통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제공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심의·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심의·결정·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제9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판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구 통합돌봄지원 특화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 경비 7억 미만 또는 연평균 3억원 미만 사업에 해당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8급 주병준(☎ 02-3423-5775)